

[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-031호]

2025년 「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」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(기업) 모집 공고

재단법인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지역 창업기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창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창업인프라 확장 및 혁신체제 구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5년 4월 29일

(재)평택산업진흥원장

0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「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」
- 추진목적 :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과 역량을 갖춘 (예비)창업가를 선발하여,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초기 성장을 촉진 함으로써 지역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
- 지원대상 : 관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(설립 3년 미만)
※ 세부 내용 'III. 신청자격' 참조
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1월까지(약 7개월 내외)
- 지원내용 : 창업사업화 지원(시제품 제작, 판로개척, 역량강화 등)
- 지원규모 : 5개사 내외 / 기업당 최대 8백만원 이내

< 주요 사업 내용 >

지원유형	사업자 형태	지원금 지급	지원규모
스타트업 도전 (예비창업자)	창업 이력이 없는 예비창업자	1, 2차(50%) 분할 지급	5개사 내외 선정 (기업당 최대 8백만원 이내)
스타트업 성장 (초기창업자)	공고일 기준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	선(先) 지출 후(後) 정산	

※ 세부 내용 해당 공고문 참조

02 분야별 지원내용

① 스타트업 도전(예비창업) 지원

지원대상	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인 예비 창업자 ※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하는 자															
지원내용	사업화 지원(세부 내용 표 1. 참조)															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정 지원금의 50% 1차 지급, 성과평가 및 정산자료 확인 후 잔여 지원금 2차 지급 ○ 지원금 100%(기업부담금 없음) ※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 															
지원절차	<table border="1"> <tr><td>사업 공고</td></tr><tr><td>2025.4. ~ 5.</td></tr><tr><td>평택기업지원시스템 공고 확인 및 신청</td></tr></table>	사업 공고	2025.4. ~ 5.	평택기업지원시스템 공고 확인 및 신청	<table border="1"> <tr><td>신청서류 접수·검토</td></tr><tr><td>2025.5.</td></tr><tr><td>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</td></tr></table>	신청서류 접수·검토	2025.5.	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	<table border="1"> <tr><td>선정평가 위원회</td></tr><tr><td>2025.5.</td></tr><tr><td>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</td></tr></table>	선정평가 위원회	2025.5.	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	<table border="1"> <tr><td>협약체결</td></tr><tr><td>2025.5.</td></tr><tr><td>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</td></tr></table>	협약체결	2025.5.	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
사업 공고																
2025.4. ~ 5.																
평택기업지원시스템 공고 확인 및 신청																
신청서류 접수·검토																
2025.5.																
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																
선정평가 위원회																
2025.5.																
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																
협약체결																
2025.5.																
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r><td>2차 지원금 지급</td></tr><tr><td>2025.12.</td></tr><tr><td>지원금 지급(50%)</td></tr></table>	2차 지원금 지급	2025.12.	지원금 지급(50%)	<table border="1"> <tr><td>성과평가 위원회</td></tr><tr><td>2025.11.</td></tr><tr><td>제출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</td></tr></table>	성과평가 위원회	2025.11.	제출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	<table border="1"> <tr><td>중간점검</td></tr><tr><td>2025.8. ~ 9.</td></tr><tr><td>사업추진 현황 점검</td></tr></table>	중간점검	2025.8. ~ 9.	사업추진 현황 점검	<table border="1"> <tr><td>1차 지원금 지급</td></tr><tr><td>2025.6.</td></tr><tr><td>총 지원금의 50% 지급</td></tr></table>	1차 지원금 지급	2025.6.	총 지원금의 50% 지급
2차 지원금 지급																
2025.12.																
지원금 지급(50%)																
성과평가 위원회																
2025.11.																
제출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																
중간점검																
2025.8. ~ 9.																
사업추진 현황 점검																
1차 지원금 지급																
2025.6.																
총 지원금의 50% 지급																

② 스타트업 성장(초기창업) 지원

지원대상	사업장 주소지가 관내인 설립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※ 공고일 기준															
지원내용	사업화 지원(세부 내용 표 1. 참조)															
지원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확정 사업비에 따른 비용 선지출, 후정산 방식 ○ 지원금 100%(기업부담금 없음) ※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금 차등 지급 가능 															
지원절차	<table border="1"> <tr><td>사업 공고</td></tr><tr><td>2025.4. ~ 5.</td></tr><tr><td>평택기업지원시스템 공고 확인 및 신청</td></tr></table>	사업 공고	2025.4. ~ 5.	평택기업지원시스템 공고 확인 및 신청	<table border="1"> <tr><td>신청서류 접수·검토</td></tr><tr><td>2025.5.</td></tr><tr><td>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</td></tr></table>	신청서류 접수·검토	2025.5.	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	<table border="1"> <tr><td>선정평가 위원회</td></tr><tr><td>2025.5.</td></tr><tr><td>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</td></tr></table>	선정평가 위원회	2025.5.	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	<table border="1"> <tr><td>협약체결</td></tr><tr><td>2025.5.</td></tr><tr><td>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</td></tr></table>	협약체결	2025.5.	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
사업 공고																
2025.4. ~ 5.																
평택기업지원시스템 공고 확인 및 신청																
신청서류 접수·검토																
2025.5.																
제출서류 검토 및 적격여부 확인																
선정평가 위원회																
2025.5.																
창업아이템 관련 발표평가 및 질의																
협약체결																
2025.5.																
진흥원-선정기업 협약체결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r><td>지원금 지급</td></tr><tr><td>2025.12.</td></tr><tr><td>지원금 지급(100%)</td></tr></table>	지원금 지급	2025.12.	지원금 지급(100%)	<table border="1"> <tr><td>성과평가 위원회</td></tr><tr><td>2025.11.</td></tr><tr><td>제출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</td></tr></table>	성과평가 위원회	2025.11.	제출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	<table border="1"> <tr><td>중간점검</td></tr><tr><td>2025.8. ~ 9.</td></tr><tr><td>사업추진 현황 점검</td></tr></table>	중간점검	2025.8. ~ 9.	사업추진 현황 점검	<table border="1"> <tr><td>사업수행</td></tr><tr><td>2025.6.</td></tr><tr><td>창업사업화 활동</td></tr></table>	사업수행	2025.6.	창업사업화 활동
지원금 지급																
2025.12.																
지원금 지급(100%)																
성과평가 위원회																
2025.11.																
제출 성과보고서 기반 서면평가																
중간점검																
2025.8. ~ 9.																
사업추진 현황 점검																
사업수행																
2025.6.																
창업사업화 활동																

※ 모집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유형별 지원기업(팀) 수를 조정할 수 있음

< 표 1. 지원항목 및 세부 지원내용(예시) >

지원항목		세부 지원내용
① 시제품 제작	외주용역	- 시제품 제작·설계 관련 외주업체 용역의뢰 비용 ※ 최소 수량을 초과한 양산 목적의 제작은 지원 불가
	재료비	-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원료, 재료 구입비용 ※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양보다 과다하게 구매시 지원 불가
② 판로개척	홍보·마케팅	- 인쇄물(브로슈어), 홍보·광고물품, 홍보영상, 홈페이지 제작 - SNS 등 광고·홍보비
	브랜딩·디자인	- 브랜드 리뉴얼 및 신규 개발 비용 - 제품, 포장, 로고, 그래픽 등 디자인
	시장조사	-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조사 비용
	통·번역	- 사업화 관련 통·번역 비용
	전시회 참가	- 창업아이템 관련 국내외 전시회/박람회 참가비용 ※ 협약기간 내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※ 출장여비 및 현지 체류비 지원 불가
③ 역량강화	시험인증	-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·시스템·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※ 결과물(시험분석결과서, 인증서 등)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것에 한하여 인정
	원가분석	- 제품 원가분석 및 가격 결정 분석 비용
	기술이전 및 가치평가	- 애로기술 진단, 자문 등 -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이전 등 진단보고서 작성, 자문
	국내·외 특허지원	- 특허·상표·PCT 출원 비용 ※ 등록 및 결과물(등록증 및 출원증)은 협약기간 내 발급완료 된 것에 한하여 인정

※ 지원 항목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

※ 비목은 최대 3개 항목 활용 가능

03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 : 아래 각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(기업)

구분	세부 내용
스타트업 도전 (예비창업자)	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평택이며,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사업자(개인 또는 법인) 폐업을 하지 않은 자
스타트업 성장 (초기창업자)	① 사업장 주소지가 평택이며,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②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미만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에 사업자(개인 또는 법인) 폐업을 하지 않은 자

□ 지원분야 : 정보·통신(ICT/SW), 전기·전자, 기계·소재(재료), 바이오·의료(생명·식품), 에너지·자원(환경), 화학(섬유), 공예·디자인 등 기술 분야

※ 이외 분야의 경우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름

□ 지원제외

< 지원 제외 대상 >

- (중복과제) 신청 과제가 기(既)개발 된 경우 또는 기(既)지원된 내용과 중복이거나 유사한 경우
- (허위사항)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
-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(기업)
- 아래 <지원 제외 대상 업종>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

< 지원 제외 업종 >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① 일반유희주점업(56211) ② 무도유희주점업(56212) ③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(91249) ④ 그 밖에 1~3에 준하는 업종으로,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- 이 외 제외업종 ① 숙박 및 음식점업(55) ② 금융 및 보험업(65~67) ③ 부동산업(70) ④ 무도장, 골프장, 스키장 및 도박장 운영업 ⑤ 기타 서비스업(93) ⑥ 기업 및 회사의 지점 및 지사 ⑦ 창업보육 지원이 필요 없는 업종 (·40~41 전기, 가스 및 증기업, 수도사업 ·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·51~52 도매 및 상품중개업, 소매업 ·60~6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, 수상 및 항공운송업 ·63 여행알선,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·74 전문,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741 법무 및 회계관련 서비스업과 742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에 한한다.) ·75 사업지원서비스업(탐정, 경비, 인력공급업 등) ·76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·80 교육서비스업 ·85~86 보건업, 사회복지사업 ·88 기타 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·90 하수처리,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·91 회원단체 ·92 수립업 ·95 가사서비스업 ·99 국제 및 외국기관

04 평가 방안

□ 서류검토

- 제출 서류 기반 적정성 및 자격요건, 누락 서류 등 사업담당자 검토
-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, 보완 요청 가능

□ 선정평가

- 3~5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제출 서류와 과제 총괄책임자의 발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진행
- 과제 총괄책임자(대표자)의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전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
 - ※ 총괄 책임자 및 실무 책임자는 과제 신청기업 참여인력으로 구성 필수
-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
 - ※ 단,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·변동될 수 있음
-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순위 부여
- 예비순위에 오른 기업은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탈락시 순차적으로 기회 부여
- 발표자를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배석 가능하며, 사전 제출한 참여 인력만 배석 가능
- 발표는 제출한 PPT 자료 기반 기업당 15분 발표(발표 7분, 질의 8분) 진행 예정

□ 평가기준

<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(안)>

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창업배경(30점)	○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및 필요성	15
	○ 창업자의 자질 및 추진 의지, 의사전달력	15
기술성(30점)	○ 기술·서비스의 우수성, 독창성	15
	○ 기술·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전략 및 가능성	15
사업성(30점)	○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시장경쟁력	15
	○ 추진계획의 구체성, 실현가능성	15
기대효과(10점)	○ 경제적, 산업적 기대효과	10
합계		100

※ 동점일 경우 '사업성 → 기술성 → 창업배경 → 기대효과 순'으로 높은 점수를 득한 기업 선정

05

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5. 4. 29.(화) ~ 5. 21.(수) 15:00 까지
- 신청방법 : ‘평택기업지원시스템’ 홈페이지(pipabiz.or.kr/icu) 온라인 접수
 - 공고문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
- 문의처 : (재)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(031-8029-9342)
- 제출서류 :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(파일 번호 매기기)
 - PDF로 변환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넘버링하여, 1개의 압축파일로 정리하여 ‘기타서류’에 업로드(신청기업명.zip)
 -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

구분	제출서류	세부내용	비고
1	사업신청서	서식 1. 활용	공통
2	사업계획서	서식 2. 활용	공통
3	개인정보 활용 동의서	서식 3. 서식 활용 / 참여인력 전원	공통
4	확약서	서식 4. 활용	공통
5	발표자료(ppt, pdf)	사업계획서 기반 발표평가 자료 작성 ※ 자유양식	공통
6	사실증명원 ※ 공고일 이후 발급본	- 예비창업자 :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- 기 창업자 :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공통
7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(국세) 국세청 홈택스, (지방세) 정부24 발급	공통
8	견적서 및 비교견적서	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, 재료비 항목 해당시 ※ 해당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	공통
9	주민등록등본	정부24 발급	예비
10	사업자등록증	국세청 홈택스 발급	초기
11	법인등기부등본	인터넷등기소 발급	초기
12	최근 2개년 재무제표	2024년 재무제표 발급 전인 경우,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업력 1년 미만업체: 매출실적확인서 제출	초기
13	중소기업 확인서	정부24 발급	초기
14	창업기업 확인서	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발급	초기
15	4대 보험 가입자 명부	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	초기
16	기타 증빙자료	해당시 / 지재권, 수상이력, 벤처기업확인서 및 창업활동 관련 성과자료 등	공통

※ 필요한 경우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06

유의사항

□ 유의사항

- 지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,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됨
-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 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(담당자 이메일, 구두 공지사항)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허위·부정한 방법 또는 같은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비용은 반환될 수 있음
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선정된 자(기업)는 사업비 계좌의 신규 개설이 가능하여야 함
- 협약 기간 중 사전에 협의 없는 대표자의 부재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지,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기간 내 명시된 지원대상·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- 사업수행 중 또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비용을 반환할 수 있음
- 기업 수요, 운영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
-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
- 신청자는 향후 성과보고서, 결과물, 설문조사, 실적 제출 등 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붙임. 창업 여부 기준 1부. 끝.

붙임

창업 여부 기준

신청기업 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	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폐업 3년 까지		창업아님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	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
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		
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	
	이종		창업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